

제214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이용주 의원 발의】



2019. 6. 19.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25호로 2019년 6월 5일 이용주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급식지원 대상자(안 제2조)
- 나. 급식지원 방법(안 제3조)
- 다. 급식지원 신청 절차(안 제5조)
- 라.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안 제6조)
- 마.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구성(안 제7조, 제8조)
- 바. 아동급식위원회 위원의 임기,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안 제9조~제11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 근거 : 「아동복지법」
-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다. 입법예고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건은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에서 위임한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급식지원 대상자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급식지원 신청 절차와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부터 제11조에서는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과 위원의 임기,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급식업체에 대한 위생·안전 교육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아동복지법」의 위임에 따라 급식 지원 대상 아동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범위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 맞도록 규정되어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1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급식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

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이나 그 가족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아동이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 포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